

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번 안 호	제44호
의 년 월 일	2010. 9. 10 (제164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8. 24.

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개정이유
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의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 문장의 표기상 나타난 어려운 용어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함. (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6조까지)

부천시의회규칙 제 호

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규칙의 제명 “부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부천시 의회의원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”으로 하고, “발급등”을 “발급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중 “부천시 의회의원”을 “부천시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신분증규격등”을 “신분증규격 등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부천시 의회의장”을 “부천시의회의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의한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”을 “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따른“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신분증의 반납등”을 “신분증의 반납 등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</u>	<u>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</u>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<u>부천시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</u> (이하 “ <u>신분증</u> ”이라 한다)의 규격, 제작 및 <u>발급등</u>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부천시의회- 의원----- ----- -----발급 등--- -----.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칙은 <u>부천시 의회의원</u> 에게 적용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부천시의회 의원-----.
제3조 (<u>신분증규격등</u>) ① ~ ③ (생략)	제3조(<u>신분증규격 등</u>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 (<u>신분증의 발급권자</u>) 신분증은 <u>부천시 의회의장</u> (이하 “ <u>의장</u> 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	제4조(<u>신분증의 발급권자</u>) ----- --부천시의회의장----- -----.
제5조 (<u>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</u>) ① <u>의장</u> 이 <u>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</u> 별지 제1호서식에 <u>의한</u> <u>신분증</u> <u>발급대장</u> 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. ② <u>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</u> 동일한 것으로서 <u>발급일전 6월</u> <u>월이내에</u> 찍은 것이어야 한다. ③ <u>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</u>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<u>의한</u> <u>신분증 재발급신청서</u> 를 <u>의장에게 제출</u> 하여야 한다.	제5조(<u>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</u>) ① ----- -----따른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-----. ③ ----- ----- -----따른----- -----.
제6조 (<u>신분증의 반납등</u>) ① ~ ② (생략)	제6조(<u>신분증의 반납 등</u>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